

#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(김유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 341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 3.  
발의자 : 김유숙 의원 외 3명

### 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의 단원 결격사유 중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·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등에 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 결격 사항의 ‘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’ 중에서 ‘피한정후견인’ 삭제(안 제7조제1항, 안 별지 제1호서식)
  - ※ 피성년후견인 : 질병, 장애,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(민법 제9조)
  - ※ 피한정후견인 : 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(민법 제12조)

-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| : 붙임 1  |
| 4. 현행조례              | : 붙임 2  |
| 5. 관계법령 발췌서          | : 붙임 3  |
| 6. 예산수반사항            | : 붙임 4  |
| 7. 부서검토의견            | : 붙임 5  |
| 8. 조례안 예고결과          | : 의견 없음 |

- 조례안 예고 : 2023. 10. 27. ~ 2023. 11. 1.

## 【붙임 1】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

###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# 1. 피성년후견인

제8조제1호 중 “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항” 을 “지방공무원법 제31조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” 을 “1. 피성년후견인”으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  김유숙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65)

## [별지 제1호서식]

###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

본인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OO부 단원으로 죄종 임용되기 전 다음과 같은 임용 결격사유가 부존재함을 확인합니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자
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.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「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·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·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을 포함한다)
9.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
10.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자
11.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학교폭력”을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 (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)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, 지속성,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

이상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,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임용 결격사유가 있음이 추후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민·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. . .

서 약 자 : (서명 또는 날인)

안 산 시 장 귀하

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7조(단원의 결격사유)</b>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~ 11. (생 략) ② (생 략)</p>	<p><b>제7조(단원의 결격사유)</b>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피성년후견인 2. ~ 11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8조(해임)</b>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</u> 2. ~ 6. (생 략)</p>	<p><b>제8조(해임)</b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지방공무원법 제31조</u> ----- ----- ----- 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별지 제1호서식</b></p>	<p><b>별지 제1호서식</b></p>
<p><b>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</b></p> <p>본인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00부 단원으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과 같은 일용 결격사유가 부존재함을 확인합니다.</p> <p>1. <u>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</u> 2. 군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면제 아니하였거나 확정된 후 5년이 지난자 아니한 자 3. 군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장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자 아니한 자 4. 군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자 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경지된 자 6. 차우관에 하지기간 등 징역과 금번까지 4월벌, 456포로 및 재판장으로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자 아니한 자 7. "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", 세고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난자 아니한 자 8. 미성년자와 대하여 "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",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"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", 제2조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피연·회피하거나 형 또는 세고감포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세고감포가 확정된 자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경과한 자들을 포함합니다) 9. 청탁으로 피연 또는 하임 쇄본을 받은 자 10. 청탁으로 해당 차우관에게서 영구제명권을 받은 자 11. "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"에 따른 "학교폭력"을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 (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)로서 그 학교의 신학령, 계속령, 교육령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</p> <p>이상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여,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일용 결격사유가 있음이 추후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게임하지 및 민·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</p> <p>20 . . .</p> <p>서 약 자 :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안 산 시 장 귀하</p>	<p><b>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</b></p> <p>본인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00부 단원으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과 같은 일용 결격사유가 부존재함을 확인합니다.</p> <p>1. <u>피성년후견인</u> 2. 군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장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면제 아니하였거나 확정된 후 5년이 지난자 아니한 자 3. 군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장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자 아니한 자 4. 군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형장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자 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경지된 자 6. 차우관에 하지기간 등 징역과 금번까지 4월벌, 456포로 및 재판장으로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자 아니한 자 7. "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", 제2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난자 아니한 자 8. 미성년자와 대하여 "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",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"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", 제2조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피연·회피하거나 형 또는 세고감포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세고감포가 확정된 자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경과한 자들을 포함합니다) 9. 청탁으로 피연 또는 하임 쇄본을 받은 자 10. 청탁으로 해당 차우관에게서 영구제명권을 받은 자 11. "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"에 따른 "학교폭력"을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 (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)로서 그 학교의 신학령, 계속령, 교육령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</p> <p>이상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여,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일용 결격사유가 있음이 추후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게임하지 및 민·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</p> <p>20 . . .</p> <p>서 약 자 :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안 산 시 장 귀하</p>